#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89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민형배·서미화·정동영

이개호 • 백혜련 • 이수진

정성호 · 이용선 · 김문수

홍기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⑤	제20조(장기구득기관)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장기구득 전	6
문 의료인은 제17조제1항에 따	
라 통보받은 뇌사추정자 및 뇌	
사판정대상자에 한하여 의무기	
록을 열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의무기</u>
	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받은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u>한다.</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